

2001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김 주 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장

I. 머리말

21세기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역동적인 한해가 될 것이다. 국경이 무너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많은 국가들이 위기탈출을 위하여 구조조정, 지식기반사회의 구축 및 정보화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최근 경제전반에 걸쳐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경제환경이 나빠지고 있으나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극복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특히 우리 공직자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금년 한해 지방세정을 둘러싼 여건도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인한 담세력 약화 등 지방세수 측면에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발전에 따른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인한 과세의 투명성·합리성 및 다양한 납세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요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에 따라 전자금융 및 상거래의 보편화 현상으로 이를 활용한 전자세정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지방세정의 운영방향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수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세자의 다양한 요

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세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함과 아울러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식의 도입등을 통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I. 2001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1. 지방화를 뒷받침하는 세수 확충

가. 2001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금년도는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담세력 약화 상황 등이 예상되므로 무엇보다도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책정한 지방세수 목표액은 지방교육재정에 이전될 지방교육세 2조 9,766억원을 포함한 23조 4,5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26.6%가 증가한 규모이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설정한 지방세수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토지·건축물 등 과세자료의 일제정비 및 D/B구축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치성재산·비과세감면 분야 및 불성실 신고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며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지역여건에 맞는 세수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간단·명료한 지방세 과표의 운영

취득세·등록세 토지과표는 각 시도에서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에 따라 운영하되 시가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위산(違算)·오기(誤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과세권자가 가감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되, 토지의 특성조사 및 표준지의 선정을 면밀히 하여 인근의 토지와

균형을 유지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내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취득세·등록세 과표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토지세 과표는 과표현실화의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간·필지간 과표의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여 과세형평을 유지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건물과표의 경우 「2001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고, 금년도에 개선된 공동주택에 대한 가산율이나 각종지수 및 가감산율의 적용 등 지역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조정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겠다.

이와 아울러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각종 지수·가감산율 등 적용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재산세의 부과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건물과표의 형평성과 현실화율의 제고 등을 위해 우리부에서 공시건물가격제도(가칭)의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토지 및 건축물이외의 과세대상물건의 과표는 가격변동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가격이 하락한 경우등은 적시에 재조사하고 시가표준액을 변경고시하여 납세자들의 불만해소와 신뢰받은 세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대상물건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각 물건별로 현실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반영율을 비교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송전철탑, 열수송관, 방송중계탑, 무선기지국시설물 등 2002년부터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물건의 시가표준액도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 지방세 『체납율 1% 낮추기』 강력 추진

지방세 체납액은 IMF 관리체제 여파로 '97~'98년에 급증한 이후 최근에는 다소간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나, 경제난으로 금년도의 징수전망은 어려운 편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체납율 1% 낮추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수확보는 물론 공평과세의 구현 및 자진납세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율 1% 낮추기 추진단』을 구성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질적·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의 강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해야 할 것이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공매처분의 확행,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의 강화, 출금금지의 요청,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장인인 체납자의 경우는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를 활성화하여 이를 체납자의 자진납세의 유도도 성실납세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동시에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도 강화하여야 하겠다.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의 적극적인 정리도 추진하면서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강제 인도 및 공매 등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체납자의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등으로 징수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되 시효경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병행하면서 지방세정의 신뢰성의 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체납세 징수는 단순히 세수감소에 따른 자주재정 확보라는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도 체납세의 방지 내지 증가는 납세윤리의식을 크게 저해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불행평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조세정의 및 과세행평의 실현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라. 탈루·은닉세원 발굴노력 강화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세자료의 정비·관리 및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미이행 등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세원을 은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세무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관리현장의 교부 등 친절하고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금년도에 지방세 세무조사시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과표의 과소신고, 신고누락 등 누락세원의 포착,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안분내역이 적정한지의 조사, 본점사

업용, 법인 신·증설로 인한 중과세에 해당여부, 비과세·감면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유예기간내에 사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무조사시 서류의 제출요구는 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법인의 관련 서류를 확보한 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의 요구는 지양하고 법인현황, 재산현황 등 사실관계의 확인위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의 강화와 더불어 토지의 소유자 변동사항, 지목 변경사항, 비과세·감면분 변동사항, 과세누락 토지여부 대사 등과 건축물의 소유자 변동사항, 구조·용도 등 실태, 무허가 신·증·개축, 고급주택 등 중과세 대상 재산실태, 화재위험 건축물 사용실태, 비과세·감면, 과세누락된 건축물 조사 및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회원권, 시설물 등 소유자 변동사항, 과세누락, 구조변경 등을 일제조사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마.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 철저 및 사후관리

금년도에는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감면률과 감면대상 등이 대폭적으로 축소 조정되어 철저한 적용이 필요하므로 각 시도에서는 중앙단위의 교육 및 자체교육·연찬 등을 강화하여 감면제도 조정에 따른 내용이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해당기관 등에도 개정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기 감면받은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고 미제출 법인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관리 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바. 지방세 비리방지대책 지속 강구

지방세 취약요소에 대하여 집중·반복 점검으로 비리유발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

단하고 지방세 수납검색체계의 완벽한 구축과 세무환경의 개선으로 비리발생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감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감사시에 취약분야를 필수적인 감사항목으로 선정하고, 그 밖에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항목은 선택적인 감사항목으로 구분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되, 특히 새로운 유형의 비리발생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는 정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납세의 징수와 관련된 법원배당금은 반드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령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조례에 따라 10~30만원)는 반드시 일련번호가 인쇄된 영수원부의 사용여부, 소액 현금수납부의 비치 여부 등 현금수납분야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 내실있는 납세자 권리 보호

가.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 기반 정착

오늘날 세정운영은 과세권자 위주에서 납세자 위주의 세정으로 변모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세정인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일단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결과통지와 연기신청시 신속한 처리,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의 안내의 철저, 과세정보의 비밀보호,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지켜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나.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실질적 운영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토록 하게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고지전에 사전적으로 권리를 구제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원을 방지하고 지방세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과세관청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소상하게 안내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주장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결정기관인 위원회의 인력·기구 등을 정예화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이유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되,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수정신고납부제도의 활성화

지방세를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납부할 과세표준 또는 세율 적용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정상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과소 또는 과다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사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납부를 할 기회를 부여하여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의 부담 등 불이익을 받던 것을 없도록 하여 수정신고 납부제도를 활성화시켜 납세자의 불만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특히 지방세법에 열거된 사유인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증빙서류의 압수,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이외에 취득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 등의 경우도 수정신고의 사유에 포함하여 확대·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라. 지방세구제제도 운영의 내실화

지방세정에 있어서 구제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납세자를 위한 구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과세관행을 개선하고 불복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취소 등 인용시 신속한 조치로 납세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전안내 등을 통한 서비스의 강화로 납세자의 불만을 제거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구제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세심의기관인 위원회의 정비보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법조인, 교수, 세무사 등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로 보강하여 실질적인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행정소송·헌법소원·위헌심판청구 등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시·도와 시·군·구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과세처분에 대한 정확한 소명자료의 작성과 승소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법부의 행정쟁송사건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마. 과오납금 환부처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하였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 또는 납입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감액의 결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으로 초과납부된 금액인 과오납금은 즉시 환부하는 것이 당연하며 납세정이나 형평과세 차원에서 타당하다.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권리자의 주소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환부 조치하여야 하며 소액 과오납금의 경우는 납세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처리하는 등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하고 아울러 과오납금에 대해 정확한 환부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미환부액은 적기에 세입처리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3. Cyber 시대에 부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보급

가. 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운영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경제거래에 인터넷 및 신용카드의 사용이 확산·보편화되면서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인터넷 납부제,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제 등을 다양하게 도입·시행중이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납부방식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납세홍보 등을 통해 확산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납부제, 신용카드 납부제, PC뱅킹, 폰뱅킹, 자동이체 납부제등은 더욱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OCR 납부제도의 불편 미비점은 개선·보완하고 OCR 납세고지서의 거부율을 시정하면서 Bar-Code 체계의 납세고지서 도입을 신중히 추진하고 아울러 지방세 인터넷 고지제를 도입토록 연구추진하여 납세편의와 행정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 지방세 전산화의 지속적 발전

지방세정의 효율화·신속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전산화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면서 관련 업무와의 통합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지방세전산시스템에 대한 성능 및 기능진단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산기기 및 S/W를 확충하고 성능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무부서 공무원의 전산운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가의 확보로 지방세전산시스템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세목간의 연계활용을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의 DB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무부서와 건축, 위생, 자동차등록, 지적 등의 세원관리 부서와 전산망으로 연계를 통하여 신속·정확한 세원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체납통계 관리시스템의 운영도 DB의 완벽한 구축 등 발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다. 지방세 민원의 적극 처리

지방세 관련 민원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어 있어 적법·신속·친절·공정한 업무처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세 민원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한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실

확인 또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확인하여 처리하고 가능한 민원처리의 법정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여야 하겠다.

다음으로 세무행정분야 민원처리 행태도 그 개선이 필요하다. 관계법령상으로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등을 의식하여 민원인에게 상급부서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닌 사실판단의 문제,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화민원 상담시 담당자의 연결지체 또는 통화중단 등으로 민원인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하며 직원별 좌석안내도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민원상담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친절하고 성실한 민원처리 자세로 지방세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시켜야 한다.

우리부에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중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지방세 민원처리가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라. 지방세 납세홍보 강화

21세기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홍보기법 등을 지방세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고 납세자가 부담한 세금은 내고장의 공공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리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지방세 현황, 지방세법령 및 감면조례 개정내용, 유권해석 사례, 심사청구 사례, 지방세 납부방법 등 최신내용을 보강하는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Cable TV와 뉴스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상공회의소(합동세무정보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방세의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홍보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여론 형성층 등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대상 세목의 개요 및 세액 산출내역, 구제제도 안내 등 세정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스승의 날에 일일교사로 출강하여 학교수업에 「지방세 강의」를 추진하고 초·중·고교의 자원봉사활동 제도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납세도우미」로 활용하는 등 차세대 납세협력자를 양성하는 미래납세자(학생)를 위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

홍보내용에 있어서도 지방세의 세목, 납기, 납기내 미납시 가산금,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과세표준 등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함과 아울러 특히 지방세의 사용용도 등을 꼭 포함토록 하여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마. 지방세정 실적평가 및 세무담당 공무원 사기양양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운영에 따른 수범사례, 특수시책 등을 발굴하고 평가·환류하는 것은 지방세정의 선진화의 추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부과 대비 징수실적, 체납액·과오납 정리실적 등 지방세수 관리, 지방세 과표 및 탄력세율 운영, 특수시책 추진현황, 지방세 기구·인력 운영, 전문교육·연찬회 실시 등 주요세정운영 항목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평가하고 선진시책에 대하여는 포상과 아울러 타시도에 전파보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지방세 업무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지방세정의 발전과 주민봉사에 공이 많은 유공공무원을 엄선·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운영실적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지방세정 실적평가, 연찬회, 각종 교육 및 연중 지도점검을 통하여 우리부에서 그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며 장관표창은 시도의 추천받아 그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세원발굴·세무조사 등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에 비해 활동비 지급액이 적어 원활한 세정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므로 시도별로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출장여비의 신설 등을 강구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4. 세정운영의 신뢰성·효율성 배가

21세기 지방세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 지방세정인

의 양성과 연구과제의 연찬 및 지역간의 세무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지방세정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중앙단위의 업무연찬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시도단위 연찬회의 개최 및 포럼, 연구모임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단위의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례·판례 위주의 참여식 교육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고 체납액정리의 실무, 과오납환부, 지방세전산화 등 교육시간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세무담당공무원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교육시 교육비의 지원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읍면동의 기능전환후 지방세 업무만 본청으로 이관되고 조직 및 인력은 축소되고 또한 그동안 단수직으로 운영되던 정원이 복수직(행정, 세무)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많아 세무조직의 전문화에 역행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세무조직의 적절한 운영과 세무직 공무원의 인사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무평정시 세무직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 통계관리의 전국온라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현재 수기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통계업무를 온라인화하여 지방세정 통계업무의 효율화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정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수 있는 지방세 전문가 집단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전문가를 선정·관리하여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위촉 활용하고, 지방세관련 세미나·공청회 개최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세정의 전문화와 세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납세협력자로서 양성하여야 하겠다.

Ⅲ. 맺음말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건전재정을 위한 우리 14,000여 세무공무원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하겠다.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자기의 맡은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추구하고 동시에 먼저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을 선진화 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실천함은 물론 우리의 고객인 납세자에 대하여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應益原則(응이익칙)

과세원칙은 여러 가지 원칙에서 구성되나 租稅의 配分原則立案이라는 側面에서 구분하면 국민이 받는 이익에 應하여 과세하는 應益的 課稅와 租稅負擔能力 與否에 따른 應能的 課稅로 分類된다.

그런데, 福祉國家時代에 있어서의 稅制의 基本원리는 應能的 課稅에 의해서 소득의 재분배의 기능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衡平의 立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는 權力的인 行政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의 恩惠를 받아서 地方産業은 발달하고 주민의 소득은 배양되며, 이 배양된 소득을 稅源으로 해서 들어오는 稅收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충당되어 다시 주민에게 환원되는 것과 같이 公共 給付와 주민의 反對給付와의 사이에 일반적 報償關係를 근거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든 租稅의 근거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應益原則은 조세의 根據論으로 볼 때 歷史的으로 큰 역할을 해왔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중요한 意義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租稅配分原則보다는 정치적 的의를 더 지니고 있으며, 국가의 給付에는 불가분한 것이 많으며 개인에게 分割計算키 어려우므로 그 이익의 측정방법에 따라서는 應能原則과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住民受益關係를 고려한다면 넓게 부담을 분담해야 할 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에서 應益原則은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다.

- 편집 실 -